

무선국관리 규정

제 1 장 목 적

제 1 조 (목 적)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(이하 “연맹”이라 한다)에서 국내 아마추어국의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.

제 2 장 자 격 증

제 2 조 (신 청) 국가기술자격시험 최종 합격자는 전파법 시행령 제112조에 의거 자격증을 발급 받는다.

제 3 조 (수수료) 기술자격 검정시험의 신청수수료는 전파법 시행령 제99조에 의한다.

제 3 장 무선국 허가

제 4 조 (허가신청) 무선국 허가신청은 전파법 시행령(이하 ‘영’이라 한다) 제31조에 의한다.

제 5 조 (변경과 신고) 영 제31조, 제45조의2에 의한다.

제 6 조 (재 허가) 무선국의 허가기간 만료 시 영 제38조에 의거 재허가 신청한다.

제 4 장 자율지도운영

제 7 조 (목 적) 본장은 국내 아마추어무선의 건전한 운용 질서와 품위를 확립하기 위하여 자율적 지도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한다.

제 8 조 (적 용) 국내 아마추어무선의 자율 및 운용 지도에 관하여 연맹 정관 및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운영 규정을 적용한다.

제 9 조 (임무 및 대상) ① 자율지도위원의 임무는 무선국 허가증에 기재된 주파수대 내에서 전파법령에 규정된 운용 준수 사항을 주의 촉구, 지도, 계몽으로 한다. ② 자율지도 대상은 전파법에 의거 허가된 모든 아마추어국으로 한다.

제 10 조 (조 직) ① 자율지도위원은 50명 이내로 두며,

중앙전파관리소의 요청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.

② 자율지도위원은 지역본부에서 추천을 받으며, 중앙전파관리소장이 위촉한다.

제 11 조 (임 기) 자율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앙전파관리소장이 재위촉할 수 있다.

제 12 조 (자율지도위원의 자격) ① 정회원(단체무선국 포함)으로서 아마추어무선기사 3급 이상, 3년 이상의 아마추어국 운용 경험이 있어야 한다. 단, 단체무선국은 예외로 한다.

② 단파대 및 초단파대 또는 그 이상의 아마추어국을 운용하고 있어야 한다.

③ 사상이 건전하고 아마추어무선의 운용에 관한 지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

제 13 조 (자율지도 내용) 자율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한다.

1. 아마추어국 운용 준수 사항
2. 아마추어 통신을 저해하는 교신내용 및 품위손상 행위
3. 아마추어국 운용상 발생하는 분쟁
4. 아마추어국에서 발생하는 전파법령 운용위반 사항

제 14 조 (결과 처리) ① 자율지도위원은 활동 실적을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관할 분소 및 연맹에 제출한다.

② 자율지도위원은 지도가 이행되지 않는 전파법령 위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반자료(녹음테이프 등 증빙자료)를 첨부하여 관할 분소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조치는 관할 분소에서 전파감시업무지침에 의거 처리한다.

제 15 조 (기록 및 공고) 전조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는 연맹 사무총국의 자율지도원부(별지)에 기록 보관하며, 필요에 따라 연맹 기관지에 공고할 수 있다.

제 16 조 (운영경비) 운영상 필요한 경비는 연맹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.

제 5 장 이동 무선국 운용

제 17 조 (목 적) 본장은 이동무선국(HLØA, N, V)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 18 조 (운 용) 이동무선국의 운용은 연맹 정회원에 한한다.

제 19 조 (권한의 위임) 대표자가 운용 장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대표권을 특정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운용 및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표자에게 있다.

제 20 조 (운용신청서) ① 이동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용 15일전까지 이동운용신청서를 소속 지역 본부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운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무총국에서 이를 조정하여 해당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21 조 (신청접수) ① 이동무선국 운용 신청은 운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접수한다.

② 운용신청서는 사무총국 및 지역본부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 양식 2부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22 조 (통 보) 접수된 신청서는 담당 이사의 결재를 얻어 그 가부를 운용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23 조 (비 용) 이동 무선국 운용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, 연맹에서 주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 24 조 (결과보고) 이동무선국의 대표자는 이동 무선국 운용 후 15일 이내 업무일지를 포함한 운용 보고서를 소속 지역본부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25 조 (교신카드) 이동무선국 운용 후 업무일지에 기재된 교신 상대국에 대한 QSL 카드를 발행하여야 한다.

제 6 장 중계기(REPEATER)설치 및 운용

제 26 조 (목 적) 본장은 아마추어무선 중계기(FM 중계기 및 DIGITAL 중계기를 이하 중계기라 함)의 허가, 설치 및 운용에 관련되는 제반 사항 등을 규정하여 중계기가

효율적으로 운용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26 조의 2 (중계기의 분류) 중계기는 사용 목적에 따라 광역망, 본부망, 지역망으로 분류한다.

- ① 광역망 : 전국적인 광역 교신 목적의 중계기
- ② 본부망 : 광범위한 본부 내 교신을 원칙으로 설치된 중계기
- ③ 지역망 : 특정지역(본부 혹은 지부)내 교신 목적의 중계기

제 27 조 (적 용) 제반 법규 적용은 전파법에 따르며, 그 외의 사항은 본 장에 의거 처리한다.

제 28 조 (기 구) 연맹 이사장은 중계기위원회를 둔다.

제 29 조 (중계기의 허가 및 폐국(폐지)) ① 중계기의 허가, 설치 및 폐국 등 필요한 절차는 각 지역 지역본부장이 연맹 이사장에게 허가 신청한다.

② 중계기는 연맹 이사장 명의로 허가신청하며 운용책임자는 각 지역의 지역 본부장이며 관리자를 둘 수 있다.

③ 중계기는 각 지역본부 관할구역에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형편상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④ 중계기의 신청은 각 지역본부장이 신청서를 연맹에 제출하여, 중계기위원회 위원이 현지를 답사하여 설치요건 심의와 조정을 거쳐야 한다. 광역망은 위원회에서 아마추어무선의 발전을 위하여,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직접 설치한다.

⑤ 중계기의 주파수(별표의 중계기주파수)는 중계기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연맹 에서 배정한다.

⑥ 중계기 신청서식은 별첨 서식에 따른다.

제 30조 (중계기 설치 조건 및 운용) ① 중계기의 설치는 전파법에 합당하여야 한다.

② 중계기는 아마추어무선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사용한다.

③ 재해 재난 및 인명구조등 긴급교신과 훈련에 우선하며, 재해,재난시는 누구나 사용 할 수 있다

④ 설치 된 중계기의 유지보수 관리책임자는 각 지역본부장이며 지부 및 단체가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.

⑤ 허가, 설치 및 보수 등 중계기에 관계되는 모든 경비는 설치허가를 받은 지역본부, 지부, 단체에서 책임져야 한다.

⑥ 설치허가를 받아 중계기를 운영하는 지역본부, 지부, 단체는 중계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

⑦ 이 규정 제31조 중계기의 기술 조건에 합당하여야

한다.

⑧ 중계기의 설치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.

1. 이 규정 제29조 제⑥항의 서식.
2. 설치 허가 요청서(지역본부장이 이사장에게 제출)
3. 설치 및 관리 계획서와 경비 내역, 설치지역본부장, 지부장, 단체장의 서약서

⑨ 제8항의 제출 서류는 연맹에 복사 보관한다.

⑩ 광역망중계기를 이용하여 교신할 때는 광역망중계기 이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31 조 (기술 조건) 중계기의 기술적인 조건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.

1. 사용 주파수
29MHz, 50MHz, 144MHz, 430MHz, 1.2GHz, 2.4GHz, 10.0GHz, 24.0 GHz (별표의 중계기주파수)
2. 전파 형식
F2, F3, DATA, DIGITAL 방식
3. 안테나공급전력
29MHz, 50MHz : 50W 이하
144MHz, 430MHz : 25W이하
1200MHz : 10W이하
4. 수신과 송신 주파수간의 간격
29MHz, (0.1MHz) 50MHz(1MHz) 144MHz:(0.6MHz)
430MHz:(5.0MHz) 1.2GHz(20MHz)
5. 수신 신호가 정지할 때 송신은 5초 이내에 정지하여야 한다.
6. 144MHz 대역이 포함된 중계기는 신규 허가 중계기 주파수로 사용할 수 없다.
7. FM 중계기는 송수신에 톤을 사용하여 중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CARRY(CSQ) 중계 기능을 사용하여도 된다.
8. FM 중계기가 톤 방식을 사용할 경우 88.5Hz로 하되 중계기간 상호 간섭 및 기타 필요로 할 경우는 다른 톤 주파수를 사용하여도 된다.(다른 톤 주파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를 중계기위원회에 서면 보고 하고 이를 공지한다.)
9. 유,무선 및 FM 중계기는 자국의 호출부호를 송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변조도는 30%~35% 이내로 한다
10. 중계기의 송신 시간은 연속 3분 이내로 하고 계속 하여 송신할 경우 자동으로 송신이 중단될 수 있어야 한다.
11. 상기 사항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

방침에 의거 변경할 수 있다.

12. 모든 중계기에는 낙뢰보호 장치 및 기기 접지를 하여야 하며, 기존 중계소 건물 내에 설치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으나 기기접지는 하여야 한다. (단, 기기접지는 3종 접지 저항값 이하로 한다.)
13. 중계기는 KARL BAND PLAN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를 설정하여야 한다.(단, 과거 허가된 중계기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변경한다)
14. KARL BAND PLAN은 국제밴드 플랜 및 국내관련법에 의거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.
15. 모든 중계기에는 별도의 필터(Filtering system)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, 중계기 간 주파수 충돌의 이유가 발생할 때는 나중에 개설(변경사항 포함)한 무선국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.

제 32 조 (관 리) ① 중계기의 설치, 보수 및 전원의 개폐 등 운용 사항은 관할 지역본부의 지역본부장이 관리하고 책임진다.

② 중계기 운용에 수반되는 모든 경비는 설치허가를 받은 지역본부, 지부 및 단체에서 부담한다.(인허가 비용 연맹 부담)

③ 중계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당연직 책임자 (중계기가 설치된 지역의 본부장)는 직무 시작시 서약서 (중계기 설치 및 운용, 무선국관리 책임자 명부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33 조 (변 경) ① 혼신, 기기 변경, 기타의 여건으로 인하여 정상적 운용이 곤란할 때에는 관할 지역본부장이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중계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주파수, 출력, 설치장소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계기위원회를 소집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③ 변경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변경하는 중계기의 관할 지역본부, 지부, 단체에서 부담한다 (단, 연맹에서 필요 변경 시 비용은 연맹에서 부담한다.)

제 34 조 (고 시) 중계기의 허가, 변경, 폐국에 관한 사항은 연맹지에 호출부호, 주파수, 출력, 운용 장소, 운용 책임자 및 기타 사항을 공고한다.

제 35 조 (보 고) ① 각 해당지역 본부장은 매년 4월말 과 11월말 이사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한다.

1. 중계기의 운용정지 시 기간과 원인
 2. 중계기의 기계고장 시 원인과 조치사항
 3. 기타 목적 외 교신 등 지시 및 규정 위반사항
- ② 유.무선(일명 에코링크) 중계기 설치허가를 받아 중계기를 운영하는 책임자(관리자)는 매월 1회 한하여 관할 지역 본부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고, 지시 및 위규 사항 또는 중계기의 문제 발생시 지역본부장은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한다. 보고사항은 ①항의 각호를 준용한다.

제 36 조 (폐 국) ① 중계기가 비정상적으로 운용될 때 관리자에게 개선토록 조치하고, 이에 불복하는 경우 그 중계기를 폐국 처리할 수 있다.

② 폐국 시에도 관리자는 모든 처리 비용 및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.

제 37 조 (규정 예외 사항) ① 중계기위원회는 위원회 설치규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

② 중계기위원회에서 결정 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이사회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한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. (2019년 2월 9일 이사회회의 의결 시행)

제 2 조 (준 칙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한다.

제 3 조 (개 정)

- ① 2020. 4. 11. 제5조 개정
- ② 2024. 3. 9. 제26조의 2신설, 제29조 ④, ⑤ 개정, 제30조 ⑩항 신설, 제31조 1호 별표의 중계기주파수 추가, 6호, 10호 개정 및 15호 신설, 제32조 ③항 신설, 제35조 ①항, ②항 개정